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80호 2017. 12. 26(화)

# 포항시보

## ◀ 입법예고 ▶

- 포항시 리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제2017 - 139호) ..... 2
- 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17 - 140호) ..... 7

## ◀ 고 시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2017 - 170호) ..... 16

## ◀ 공 고 ▶

- 공인공고(제2017 - 1732호)..... 18

회								
람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7 - 139호

**공 고**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읍면동지역 이통장 지원자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유능한 이통장에게 지속적인 장량동 지역의 지속적 지역 봉사 기회 제공하여 통·반의 효율적 관리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자가 없는 경우 이통장 임기 예외 추가 → 제3항

구 분	중 전	개 정
임 기	임기 3년, 한차례 중임	임기 3년, 한차례 중임
임기 예외	- 50세대 이하 이장 임기	- 50세대 이하 리의 경우 - 지원자가 없는 리·통의 경우

나. 임기 중 사퇴시 3년 이내 재위촉 불가 조항 분리 신설함 → 제4항

다. 제4항 신설에 따른 직권 위촉 해제 조항 변경 → 제5항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7.12.20. ~ 2018.1.9.(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자치행정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2073, FAX 054)270-2070, E-mail wltjs878@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이통장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1. 50세대 이하 리의 경우
  2. 지원자가 없는 리·통의 경우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리통반장의 위촉) ①~② (생략)</p> <p>③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고, 50세대 이하의 이장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p> <p>&lt;신 설&gt;</p> <p>④ (생략)</p>	<p>제5조(리통반장의 위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이통장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0세대 이하 리의 경우</li> <li>2. 지원자가 없는 리·통의 경우</li> </ol>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포항시 공고 제2017 - 140호

# 공 고

「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포 항 시 장

## 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규칙 제명 개정 및 이통장 추천절차의 동일 기준 마련으로 행정혼선 방지 및 이통장 운영·관리에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 →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나. 이통장 추천절차 세부사항 조항 신설

구 분	세 부 사 항
이·통장 위촉시 추천절차	- 읍면동에서는 이통장 위촉이 필요한 경우 리통 책임자 추천 공지함 이때 공지 기간은 2주 이상, 공지방식은 홈페이지 등 활용 - 리통별 책임자 추천 방법 •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 책임자 추천 ※ 중임 등 재위촉시에도 추천절차 동일
지원자가 없는 경우 추천절차	- 상기 추천절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 읍면동 이통장 선발위원회를 통해 책임자를 선발함 단,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읍면동 상황에 맞게 정함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7.12.20. ~ 2018.1.9.(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073, FAX 270-20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을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포항시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반장회의를 각각”을 “반장회의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이·통장의 추천절차) 이·통장의 추천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통장 임기만료로 위촉 할 경우 읍면동에서는 리통 책임자 추천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지기간은 2주 이상하고 공지방법은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판 등 활용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2. 리통에서는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책임자를 추천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절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 이통장 선발위원회를 통해 책임자를 선발할 수 있다. 단,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읍면동에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산하”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인”을 “다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1인이 수개반”을 “1명이 다수의 반”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읍·면·동우수반”을 “읍·면·동 우수반”으로 하고, “5개이내”를 “5개 이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구분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가목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우수반”을 “시 우수반”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시예산”을 “시 예산”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을 위하여”를 “시행에”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align="center"><u>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u></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포항시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회의 개최)</b> ① ~ ③ (생략)</p> <p>④ 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이·통장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b>제3조(회의 내용)</b>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p> <p>1. ~ 3. (생략)</p> <p>4.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p> <p>&lt;신 설&gt;</p>	<p align="center"><u>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u></p> <p><b>제1조(목적)</b>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p> <p>-----.</p> <p><b>제2조(회의 개최)</b>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u>반장회의를</u> -----.</p> <p>-----.</p> <p>⑤ (현행과 같음)</p> <p><b>제3조(회의 내용)</b> ----- 각 호-----</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p> <p><b>제3조의2(이·통장의 추천절차)</b> 이·통장의 추천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이통장 임기만료로 위촉 할 경우 읍면동에서는 리통 적임자 추천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지 기간은 2주 이상하고 공지방법은</p>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인을 둔다.

② 시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이·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판 등 활용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2. 리통에서는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책임자를 추천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절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 이통장 선발위원회를 통해 책임자를 선발할 수 있다. 단,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읍면동에서 정한다.

제6조(지도담당) ① -----  
----- 1명 -----.

②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

③ --- 다수-----.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1명이  
다수의 반-----.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 (생략)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 6. (생략)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생략)

② “읍·면·동우수반”은 읍·면·동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읍·면·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생략)

가. 반장 : 시장명의를 개인표창장

나. ~ 다. (생략)

2. 시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예산으로 부담한다.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제9조(우수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읍·면·동 우수반-----  
-----  
-----  
-----  
-----5개 이내-----  
-----.

제10조(우수반 포상) -----  
----- 각 호에 따라 ---  
-----.

1. (현행과 같음)

가.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2. 시 우수반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시 예산-----  
-----.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  
 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위임규정) ----- 시행에 -  
 -----  
 정한다.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7-170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포 항 시 장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리, 중산리 일원 (변경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체육시설
    - 명 칭 : 포항 컨트리클럽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번길 126 (주)홍익레저산업 대표자 이병진
  - 4. 사업계획 내용
    - 부지면적 : 986,443㎡(대중 18홀)
    - 건축면적 : 5,282.16㎡ (연면적 9,403.64㎡)
    - 사업기간
      - 당 초 : 2003.12.26 ~ 2017.12.25
      - 변 경 : 2003.12.26 ~ 2018.06.25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포항시 북구 송라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권리 구분	관계인 주 소	비고
				공부	편입				
1	상송리	203	답	218	225.7	김상수 창원시 성산구 외리로34번길 13, 105동 801호			
2	상송리	204	답	311	315.7	김상수 창원시 성산구 외리로34번길 13, 105동 801호			
3	상송리	산23	임	24,595	24,488.5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4	상송리	산27	임	17,455	16,467.1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5	상송리	산28	묘	4,205	3,773.1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6	상송리	산37-1	임	19,835	19,713.1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7	상송리	산37-2	임	5,554	5,458.4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8	상송리	산38	임	3,174	2,579.5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9	상송리	산39-1	임	343,140	332,238.2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0	상송리	산39-2	임	11,901	12,097.8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1	상송리	산43-2	임	30,634	30,682.8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2	상송리	산44	임	87,273	88,460.0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3	상송리	산45-1	임	298	374.4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4	상송리	산46	임	3,570	4,225.4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5	상송리	산47	임	4,364	4,303.8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6	상송리	산48	임	196,760	194,370.8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7	상송리	산61-1	임	8,265	8,767.9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8	상송리	산62-1	구	973	973	국토교통부			
19	중산리	산26	임	41,256	40,797.7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20	중산리	산28-1	임	40,463	37,327.0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21	중산리	산29	임	114,248	108,125.3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22	중산리	산30	임	50,380	50,677.8	(주)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합 계				1,008,872	986,443				

※ 편입면적은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확정 현황측량 성과에 따른 구적 면적임

**공 고**

포항시공고 제2017 - 1732호

**공 인 공 고**

포항시 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2.

**포 항 시 장**

1. 등록 사유 : 행정기구 개편
2.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 1. 2.
3. 등록 공인의 공인 이름 및 인영 : 붙임 1

□ 등록 공인의 공인 이름 및 인영(붙임1)

공인 이름	규격	인영	비고
포항시지진피해수습단 방재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 1.8cm정방형		등록
포항시지진피해수습단 방재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 1.8cm정방형		등록
포항시지진피해수습단 안전도시사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 1.8cm정방형		등록
포항시지진피해수습단 안전도시사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 1.8cm정방형		등록
포항시지진피해수습단 주거안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 1.8cm정방형		등록
포항시지진피해수습단 주거안정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 1.8cm정방형		등록